

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즉시
기관(업체)명칭				
등록번호		등록일		
평가담당부서 소재지				
폐업일				
사유				

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19제1항에 따라 위 신고인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가 교통영향평가협회를 경유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
 월
 일

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

경유확인자

(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